

# 2025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방향

01

'25년 평가지표 개편방향

02

A. 운영체계 평가지표 설명

03

B. 업무신뢰도 평가지표 설명

04

C. 업무성과 평가지표 설명

05

D. 가감점 평가지표 설명



# '25년 평가지표 개선방향

# 01

1. '25년 지표 주요 개선사항
2. '25년 평가방법 및 지표 변경



01

## '25년 지표 주요 개선사항

'23년부터 적용되는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동일하게  
전 분야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분야를  
**4개로 구분**

기존 평가기준은  
3단계(적정-보통-미흡)  
**5단계(배점의 0.2~1.0)**

AS-IS		TO-BE	
평가분야	배점	평가분야	배점
㉠ 운영체계	400점	㉠ 운영체계	300점(-100)
㉡ 업무성과	600점	㉡ 업무신뢰도	500점
		㉢ 업무성과	200점
		㉣ 가감점	±200

02 '25년 세부평가 지표 구성

1 / 3

분야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합 계			1,000	
A 운영 체계	소 계		400	
	A.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80)	1.1 운영방침, 사업 및 업무표준의 수립	60	
		1.2 업무관리체계	20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인적기준) (150)	2.1 전문인력 추가 확보 여부	40	
		2.2 관련 분야 자격증 및 경력보유 수준	50	
		2.3 직원 교육훈련(내·외부)	60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물적기준) (170)	3.1 고성능 장비 추가확보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40	
		3.2 법정 시설 및 장비 구비 및 성능	130	
	가감 점항 목	A.4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4.1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관련 기관 또는 보유 인력의 정부포상 수여 실적(대통령:5,총리:4,장관:3,이사장:2)	+10
			4.2 최근 2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개월수별 -15점, 최대 -80점)	-80
			4.3 최근 2년 이내 시정조치·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건별 -2점, 최대 -20점)	-20
		A5. 종합화	5.1 종합기술지원(컨소시엄 구성 포함, 동일기관 +5점, 타기관 +10점)	+10

분야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합 계			1,000
A. 운영 체계 (300)	소 계		300
	1.운영관리 (200점)	① 기관 운영규정의 적정성	100
		② 업무지침(매뉴얼)의 적정성	60
		③ 보유장비 검·교정 이력카드 관리	40
	2.인력관리 (100점)	① 산업보건분야 종사 경력보유 수준	30
		② 전문인력 추가 확보 여부	20
		③ 교육, 훈련 계획 수립 및 이행	50

['23년]

A.1 (운영방침)

A.3 (시설,장비 보유)

A.2 (인적자원, 교육..)

A.4~5 (포상, 행정, 종합화)

['25년]

A.1 (운영관리)

A.2 (인력관리)

D. 1~2 (가점,벌점)

02 '25년 세부평가 지표 구성

2 / 3

B 업무 성파	소 계		600
	B.1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310)	1.1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절차 수립 및 시행	70
		1.2 증상문진 및 기록관리	40
		1.3 청력검사	40
		1.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40
		1.5 판정, 검사항목 선정 및 의학적 소견 설명	100
		1.6 2차 검사 대상자 후속조치	20
	B.2 건강진단 분석능력 신뢰도 (120)	2.1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정도관리 결과	30
		2.2 폐활량검사능력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40
		2.3 청력 검사능력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30
		2.4 분석 정도관리 결과(선택항목)	20 (+10점)
	B.3 신규 발굴율(50)	3.1 특수건강진단 대상 신규 발굴율	50
	B.4 고객 만족도 (60)	4.1 고객만족 및 서비스 향상활동	40
		4.2 고객만족도 조사	-20
		4.3 사후관리 대상 지도	20
	B.5 그 밖의 제반사항 (60)	5.1 결과표 송부	50 (+10점)
		5.2 문진결과 기록보관	10
		5.3 자체평가의 적정성 [신설]	+10
	가점 B.6 직업병 감시체계	6.1 중독질환 발굴 및 조치 건수	+50

B. 업무 신뢰도 (500)	소 계		500	
	1. 정도관리결과 (100점)	① 정도관리결과	100	
	2. 사전조사 (50점)	① 사전조사 적정성	50	의사평가
	3. 검사과정 (200점)	① 이학적 검사 실시 및 기록의 충실성	20	의사평가
		② 문진의 적정성	20	의사평가
		③ 폐기능검사의 적정성	40	
		④-1 청력 검사실, 부스설치 및 보정점검의 적정성	20	
		④-2 청력검사방법의 적정성	20	
		④-3 청력검사결과의 적정성	20	의사평가
	4. 판정 및 기록유지 (150점)	⑤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의 적정성	30	
		⑥ 검사항목의 적절성	30	의사평가
		① 2차 검진대상 및 후속조치 적정성	30	
		②-1 건강진단 결과 판정의 적정성	30	의사평가
		②-2 업무관련성 평가방법의 적정성	30	의사평가
②-3 업무적합성 평가의 적정성		30	의사평가	
③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 보관 적정성		30		

['23년]

B.1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

B.2 (건강진단 분석능력 신뢰)

['25년]

B.2 (사전조사 적정성)  
B.3 (검사과정 中 의사지표)  
B.4 (판정 및 기록유지)

B.1 (정도관리 결과)

02 '25년 세부평가 지표 구성

3 / 3

업무 영역	소 계		600
	B.1 건강진단 결과 및 관정의 신뢰도 (310)	1.1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절차 수립 및 시행	70
		1.2 증상문진 및 기록관리	40
		1.3 청력검사	40
		1.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40
		1.5 관정, 검사항목 선정 및 의학적 소견 설명	100
		1.6 2차 검사 대상자 후속조치	20
	B.2 건강진단 분석능력 신뢰도 (120)	2.1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정도관리 결과	30
		2.2 폐활량검사능력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40
		2.3 청력 검사능력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30
		2.4 분석 정도관리 결과(선택항목)	20 (+10점)
	B.3 신규 발굴율(50)	3.1 특수건강진단 대상 신규 발굴율	50
	B.4 고객 만족도 (60)	4.1 고객만족 및 서비스 향상활동	40
		4.2 고객만족도 조사	-20
		4.3 사후관리 대상 지도	20
	B.5 그 밖의 제반사항 (60)	5.1 결과표 송부	50 (+10점)
		5.2 문진결과 기록보관	10
		5.3 자체평가의 적정성 [신설]	+10
	가점 B.6 직업병 감시체계	6.1 중독질환 발굴 및 조치 건수	+50

C. 업무 성과 (200)	소 계		200	
	1. 조기발견 (100점)	① 특수건강진단 신규사업장 발굴 노력	50	
		② 직업성 유소견자, 요관찰자 발견 성과	50	
	2. 사후관리 (20점)	① 사후관리 대상 설명 적정성	20	의사평가
		② 수검자 또는 사업장 만족도	50	
	3. 운영성과 (80점)	① 건강진단결과 등 K2B입력 적정성	30	
② 수검자 또는 사업장 만족도		50		
D. 가감점 (±200)	소 계		±200	
	1.가점제 (+200점)	① 포상 및 종합기술지원 사례	+50	
		② 급성중독질환 발굴 및 조치 건수	+100	
		③ 정부반영노력도 (기관미소재 지역 특검 수검자수)	+50	
	2.벌점제 (-200점)	① 부실검진으로 사회적 물의 야기	-100	
② 정부 행정조치 처분 여부		-100		

['23년]

B.3 (신규발굴율)

B.4 (고객 만족도)

B.5~ (그 밖의 제반사항)

['25년]

C.1.① (신규사업장 발굴)  
C.1.② (D1, C1 발견)

C.2.① (사후관리)  
C.3.② (만족도)

C.3.① (K2B입력 적정성)

# A. 운영체계 지표 설명

# 02

A.1 운영관리

A.2 인력관리



# A.1 운영관리

---

< 200점 >

A.1.1 기관 운영규정의 적정성

A.1.2 업무지침(매뉴얼)의 적정성

A.1.3 보유장비 검·교정 이력카드 관리

A.1.1

배점  
100점

기관 운영규정의 적정성

(1/3)

평가취지

체계적인  
특수건강진단 수준  
향상을 위한  
운영규정의 보유 및  
실행 여부 평가

※ '반영'과 '실행'이  
모두 적합한 경우  
만족한 것으로 평가

A.1. 운영관리	① 기관 운영규정의 적정성 (100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평가기준을 모두 만족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0
평가기준을 5 ~ 6가지 만족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0.8
평가기준을 3 ~ 4가지 만족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0.6
평가기준을 1 ~ 2가지 만족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0.4
평가기준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0.2

규정·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7가지 항목)	반영(최신화)여부	실행여부
<b>I.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매뉴얼)</b> ① 업무 수행 절차 <b>II. 법규 등록부 및 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b> ② 법규등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③ 산안법 관련 제·개정 사항에 대한 법규등록대장 ※ 색인목록으로 기재하여 등록 가능 <b>III. 조직의 업무관리체계에 관한 사항</b> ④ 수행인력의 업무분장 및 관리체계 <b>IV. 수행인력의 역량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b> ⑤ 기술자격, 경력, 교육 이수 등의 기록관리 및 활용 <b>V. 특검업무 자체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b> ⑥ 자체평가 계획 및 기준 ⑦ 평가결과에 따른 환류 활동		

A.1.1

배점  
100점

기관 운영규정의 적정성

( 1 / 3 )

평가취지

체계적인  
특수건강진단 수준  
향상을 위한  
운영규정의 보유 및  
실행 여부 평가

※ '반영'과 '실행'이  
모두 적합한 경우  
만족한 것으로 평가

A.1. 운영관리	① 기관 운영규정의 적정성 (100점)
평가기준	
총점 (배점×평가결과)	
평가기준을 모두 만족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0
평가기준을 5 ~ 6가지 만족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0.8
평가기준을 3 ~ 4가지 만족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0.6
평가기준을 1 ~ 2가지 만족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0.4
평가기준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0.2

〈 안전보건관련 법규 등록 검토대장 예시 〉

구분	안전보건법규	공포일 (시행일)	적용 조직	검토자	검토일
1	산업안전보건법	'21.05.18. ( '21.11.19 )	본사, 지역본부, 연구원	○○○	'21.06.30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01.27. ( '22.01.27 )	본사, 지역본부, 연구원	○○○	'21.06.30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2.01.04. ( '22.04.05 )	본사, 지역본부, 연구원	○○○	'21.06.30
4	도시가스사업법	'22.02.03. ( '22.02.03 )	본사, 지역본부, 연구원	○○○	'21.06.30

A.1.2

배점  
60점

업무지침(매뉴얼)의 적정성

(2/3)

평가취지

표준화된 특수건강  
진단 실시를 위한  
업무지침(매뉴얼)의  
보유 및 적정성 평가

※ '보유 및 적정성' 과  
'숙지여부'에 대하여  
○ / × 로 평가

A.1. 운영관리	② 업무지침(매뉴얼)의 적정성(60점)
평가기준	
총점 (배점×평가결과)	
평가기준을 모두 만족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0
평가기준을 5가지 만족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0.8
평가기준을 4가지 만족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0.6
평가기준을 3가지 만족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0.4
평가기준을 2가지 이하 만족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0.2

평가대상 업무지침 (6가지 항목)	보유(최신화) 및 적정성 여부	숙지여부
① 사전조사 지침의 적정성		
② 진단검사 시료보관 및 운반에 관한 지침의 적정성		
③ 폐활량검사 지침의 적정성		
④ 생물학적 노출평가 지침의 적정성		
⑤ 생체시료 노출평가 표준 분석 지침의 적정성		
⑥ 실험실 안전보건지침 및 관리의 적정성		

① 「사전조사 지침」 : 기존 B.1.1.1 (의사평가에서 공단 이관)

②, ③, ④, ⑤, ⑥ : 기존 A.1.업무표준의 수립

A.1.3

배점  
40점

보유장비 이력카드 및 검·교정 등 유지,관리

(3/3)

평가취지

검사 및 분석  
장비대장, 검·교정  
적절하게 유지·관리  
되는지를 평가

“전자저울” : 검·교정  
무진동테이블 설치여부

A.1. 운영관리	③ 보유장비 이력카드 및 검·교정 등 유지·관리(40점)
평가기준	
총점 (배점×평가결과)	
장비대장 및 이력카드 관리, 검교정 실시가 모두 적절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0
장비대장 및 이력카드 관리는 적정하나, 검교정이 일부 누락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0.8
장비대장 및 이력카드 관리는 일부 부적정하나, 검교정 실시가 모두 적절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0.6
장비대장 및 이력카드 관리가 일부 부적정하거나, 검교정이 일부 누락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0.4
장비대장 및 이력카드가 없거나, 검교정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0.2

[장비대장 관리]

주요 검사 및 분석 장비에 대한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동일한 모델의 장비별 (구입년월일이 동일한 장비)로 해당 장비의 **시리얼번호, 용도, 구입·수리 및 점검일자 등이 기록된** 장비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장비사진 포함)

[고성능 장비 1개 이상 또는 추가확보] <가점>

- \* 원자흡광광도계(AAS)  
→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ICP/MS), 수은분석기(추가)
- \*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  
→ 검출기 추가 확보(MSD, ECD, NPD), 헤드스페이스 샘플러 추가 확보
- \*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 추가

☞ ('23년 동일 A.3.1 반영)\_산안법 시행령 '장비기준'에서 BEI 분석장비

# A.2 인력관리

---

< 100점 >

A.2.1 산업보건분야 종사 경력보유 수준

A.2.2 전문인력 추가 확보 여부

A.2.3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이행

A.2.1

배점  
30점

산업보건분야 종사 경력보유 수준

(1/3)

평가취지

- 특수건강진단 종사자의 풍부한 경험에 따른 지식과 응용력을 가진 인력을 보유하도록 유도
- 검진결과 신뢰성 제고 위해 종사경력 평가

A.2. 인력관리	① 직원의 산업보건분야 종사 경력보유 수준(30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산업보건분야 종사 경력이 평균 5년 이상	<input type="checkbox"/>	1.0
산업보건분야 종사 경력이 평균 4년 이상	<input type="checkbox"/>	0.8
산업보건분야 종사 경력이 평균 3년 이상	<input type="checkbox"/>	0.6
산업보건분야 종사 경력이 평균 2년 이상	<input type="checkbox"/>	0.4
산업보건분야 종사 경력이 평균 2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0.2

➤ 평가 방법

- 평가대상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 신고인력(변경인력포함,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제외)에 대해서 산업보건분야 종사 경력을 평가
- 평가대상 기간 중 6개월 이상 고용 및 자격 유지가 확인되어야 함

➤ 판단 기준

- 산업보건분야 종사 경력 : 특수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적정한 자격증을 유지하여 종사한 경력을 평가
- 산업보건분야 종사 경력은 4대 보험 등 경력 증빙 문서를 통하여 확인

A.2.2

배점  
20점

전문인력 추가 확보 여부

(2/3)

평가취지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대상업무, 유해인자 및 대상자 선정 등)와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 등

산업보건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력확보

A.2. 인력관리	② 전문인력 추가 확보 여부 (20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전문인력 추가 확보 점수 합계가 9점 이상	<input type="checkbox"/>	1.0
전문인력 추가 확보 점수 합계가 6점 이상	<input type="checkbox"/>	0.8
전문인력 추가 확보 점수 합계가 4점 이상	<input type="checkbox"/>	0.6
전문인력 추가 확보 점수 합계가 2점 이상	<input type="checkbox"/>	0.4
전문인력 추가 확보 점수 합계가 2점 미만	<input type="checkbox"/>	0.2

➤ 평가 방법

-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에 따른 모든 지정인력(고용노동부 신고 기준) 중 **6개월 이상** 종사한 직원

➤ 판단 기준

- ✓ 전문인력 추가 확보 또는 전문자격 취득 점수 기준
  - 9점 :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전문간호사
  - 6점 : 산업위생관리기사
  - 2점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 ※ 동일인이 복수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장 높은 점수의 자격만 인정

A.2.3

배점  
50점

교육, 훈련 계획 수립 및 이행

(3/3)

평가취지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훈련을  
통하여 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윤리성을 함양

※ 전문의의 경우  
가중치 "2" 부여

A.2. 인력관리	③ 교육, 훈련 계획 수립 및 이행 (50점)
평가기준	
총점 (배점×평가결과)	
교육·훈련 이행률이 100%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1.0
교육·훈련 이행률이 80% 이상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0.8
교육·훈련 이행률이 60% 이상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0.6
교육·훈련 이행률이 50% 이상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0.4
교육·훈련 이행률이 50% 미만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0.2

➤ 평가 방법

- 매년 지도요원의 **교육·훈련\***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종합계획 등 수립 가능)하고 적정하게 이행되는지 평가

\* 교육·훈련 : ① 내부교육, ② 전문화교육, ③ 세미나 또는 학술대회 등

- 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는 교육 이수증, 관련 문서 등을 확인

➤ 판단 기준

- 교육·훈련계획(① 내부교육, ② 전문화 교육, ③ 세미나 또는 학술대회) 중 매년 수립하지 않거나, 1가지 이상 누락한 경우 한 단계 하향 평가

- 신규입사자는 입사 3개월 이내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고, 6개월 이내 실적을 확인

- 신규입사자 교육계획 및 이행 누락된 경우 한 단계 하향 평가

# B. 업무신뢰도 지표 설명

# 03

B.1 정도관리 결과

B.2 사전조사

B.3 검사과정

B.4 판정 및 기록유지



# B.1 정도관리 결과

< 100점 >

B.1.1 정도관리 결과

B.1.1

배점  
100점

정도관리 결과

평가취지

- ✓ 흉부방사선 사진촬영
- ✓ 폐활량 검사능력
- ✓ 청력 검사
- ✓ 분석 정도관리
  
- 정도관리 결과 반영
- 내부 및 임상정도관리 참여 유도
- 검사결과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

B.1. 정도관리결과 ① 정도관리결과 (배점: 100점)		
평가기준	배점	평가결과
합계	100점 (최대 +10점 가점)	
[평가1] 정도관리결과 + 가점	90점 (최대 +10점 가점)	
[평가2] 내부정도관리	5점	
[평가3] 임상정도관리 참가 실적	5점	

[평가1\_정도관리결과(배점90점)]

- 평가기간 내 ① 흉부방사선 사진촬영(25점), ② 폐활량 검사능력(25점), ③ 청력 검사(25점), ④ 분석 정기 정도관리 결과(15점)\_공단 연구원 자료 활용하여 상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 단, 정기정도관리 결과가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최근 수시정도관리 결과로 평가
- 분석정도관리는 선택항목 적합수에 따라 가점 부여(최대 +10점)

[평가1\_정도관리결과(배점90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흉부방사선	폐활량	청력	분석
평가기간 내 정도관리 결과 평균 90점 이상	<input type="checkbox"/> 25	<input type="checkbox"/> 25	<input type="checkbox"/> 25	<input type="checkbox"/> 15
평가기간 내 정도관리 결과 평균 80점 이상	<input type="checkbox"/> 20	<input type="checkbox"/> 20	<input type="checkbox"/> 20	<input type="checkbox"/> 10
평가기간 내 정도관리 결과 평균 70점 이상	<input type="checkbox"/> 15	<input type="checkbox"/> 15	<input type="checkbox"/> 15	<input type="checkbox"/> 5
평가기간 내 정도관리 결과 평균 60점 이상	<input type="checkbox"/> 10	<input type="checkbox"/> 10	<input type="checkbox"/> 10	<input type="checkbox"/> 1
평가기간 내 정도관리 결과 평균 60점 미만	<input type="checkbox"/> 0	<input type="checkbox"/> 0	<input type="checkbox"/> 0	<input type="checkbox"/> 0

※ 분석정도관리 선택항목 4개 이상 적합시 가점 +10, 3개이상 적합시 가점 +5점 부여

B.1.1

배점  
100점

정도관리 결과

평가취지

- ✓ 흥부방산선 사진촬영
- ✓ 폐활량 검사능력
- ✓ 청력 검사
- ✓ 분석 정도관리
- 정도관리 결과 반영
- 내부 및 임상정도관리 참여 유도
- 검사결과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

B.1. 정도관리결과 ① 정도관리결과 (배점: 100점)		
평가기준	배점	평가결과
합계	100점 (최대 +10점 가점)	
[평가1] 정도관리결과 + 가점	90점 (최대 +10점 가점)	
[평가2] 내부정도관리	5점	
[평가3] 임상정도관리 참가 실적	5점	

[평가2\_내부정도관리(배점5점)]

- 기관자체 내부 정도관리 지침(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지침대로 내부 정도관리를 실시함을 확인 → 적정(5점), 보통(3점), 미흡(1점)
- 분석결과데이터 중 랜덤으로 5개 이하를 선택하여 내부 정도관리 대장에 기록된 분석 값과 일치하는지 확인

[평가3\_임상정도관리 참가 실적(배점5점)]

- 특수건강진단 임상검사항목에 해당하는 정도관리 5개 분야(① 임상화학\_일반화학 검사, ② 진단혈액학\_일반혈액검사, ③ 면역혈청학\_간염바이러스항원항체검사, ④ 요경검학\_소변검사, ⑤ 면역측정검사\_종양표지자검사1 분야)의 정도 관리 참가 실적 확인 → 5점(5개 분야 모두), 3점(일부), 1점(미실시)

# B.2 사전조사

---

< 50점 >

B.2.1 사전조사 적정성 (의사평가)

B.2.1

배점  
50점

사전조사 적정성\_의사

평가취지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에 관한 기관  
고유의 절차서가 현장  
에서 유효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평가

※ 검토자는 특수건강진단  
수행하는 전문의

B.2. 사전조사		① 사전조사 적정성 (배점: 50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조사 대상 사업장(부서)의	90% 이상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0
조사 대상 사업장(부서)의	80% 이상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0.8
조사 대상 사업장(부서)의	70% 이상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0.6
조사 대상 사업장(부서)의	50% 이상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0.4
조사 대상 사업장(부서)의	50% 미만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0.2

➤ 평가 방법

- 평가대상 기간 내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한 사업장 중에서 50인 이상 사업장 5개소와 50인 미만 사업장 5개소를 무작위로 선정
- ※ 사업장 수가 불충분하여 규모별로 조사대상을 선정할 수 없다면 규모에 상관없이 5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하며, 전체 검진사업장 수가 5개소 이하인 경우에는 전수(全數)를 평가
- 선정된 사업장의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서(가칭)를 확인하여 파악된 보건관리자료(최근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결과 등)와 비교하여 ① 보건관리자료 수집·보관, ②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및 대상자, ③ 사업주와 사전논의(서명 등)의 적정성 평가

➤ 판단 기준

- ①~③의 내용이 모두 만족한 경우 '적정'으로 평가

# B.3 검사과정

---

< 200점 >

B.3.1 이학적 검사 실시 및 기록의 충실성 (의사평가)

B.3.2 문진의 적정성 (의사평가)

B.3.3 폐기능 검사의 적정성

B.3.4.1 청력 검사실, 부스설치 및 보정점검의 적정성

B.3.4.2 청력검사방법의 적정성

B.3.4.3 청력검사결과의 적정성 (의사평가)

B.3.5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의 적정성

B.3.6 검사항목의 적절성

B.3.3

배점  
40점

폐기능검사의 적정성

(3 / 8)

평가취지

폐활량검사의 정확성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폐활량 검사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적정성 평가

B.3. 검사과정	③ 폐기능검사의 적정성 (배점: 40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폐활량 검사실 관리, 검사기 보정, 감염예방조치가 모두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0
위 3가지 항목 중 검사기 보정을 포함한 2가지가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0.8
위 3가지 항목 중 검사기 보정을 제외한 2가지가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0.6
위 3가지 항목 중 1가지가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0.4
위 3가지 항목 모두 부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0.2

➤ 평가 방법 ('23년 동일)

- ① 폐활량 검사실, ② 검사기 보정, ③ 감염예방 조치의 적정여부를 판단기준에 따라 평가
- (폐활량 검사실) 별도의 폐활량 검사실을 보유하고, 적절한 환기 및 소독 시설을 보유·실시하는지 평가
- (검사기 보정) 폐활량 검사기의 보정유무 및 보정시기, 보정방법의 적정성 평가
- (감염예방조치) 검사장비의 소독방법 및 실시·기록 관리의 적정성, 인라인 필터 및 코마개의 일회용품 사용 등 재사용 적정성을 평가

B.3.4.1

배점  
20점

청력검사실, 부스설치 및 보정점검의 적정성 (4/8)

평가취지

신뢰성 있는 청력검사 결과의 정확성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청력검사실 환경 및 장비 설치·보정의 적정성 평가

※ 소음측정: 출장검진 시 해당일 × (관리적 차원)

B.3. 검사과정	④-1 청력 검사실 환경 및 장비 보정의 적정성 (배점: 20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청력 검사실 환경 및 장비 설치·보정 관련 항목 모두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0
청력 검사실 환경 및 장비 설치·보정 관련 항목 중 3가지가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0.8
청력 검사실 환경 및 장비 설치·보정 관련 항목 중 2가지가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0.6
청력 검사실 환경 및 장비 설치·보정 관련 항목 중 1가지가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0.4
청력 검사실 환경 및 장비 설치·보정 관련 항목 모두 부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0.2

➤ 평가 방법 ('23년 동일)

- ① 청력 검사실, ② 오디오 부스설치, ③ 오디오부스의 배경소음 측정, ④ 검사기 보정점검의 적정여부를 판단기준에 따라 평가

○ 음향보정점검은 연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외부업체가 실시한 음향보정점검 보고서를 확인

※ 2023년 평가와 동일하게 가점방식으로 평가 예정이며, 배점(20점)을 초과할 수 없음

[가점기준(최대 +5점)]

ISO 기준(분기당 1회 이상)에 따라, 청력검사기 음향보정점검 실시 횟수에 따른 가점 차등 부여

- 평가대상 기간동안 총 8회 실시한 경우 : +5점
- 평가대상 기간동안 총 5 ~ 7회 실시한 경우 : +3점
- 평가대상 기간동안 총 3 ~ 4회 실시한 경우 : +2점

※ 평가주기가 2년이므로 평가대상 기간동안 총 8회를 권고

<표 2> 정밀청력검사서 청력부스 내 허용소음레벨 기준(ISO 8253-1)

1/3 옥타브밴드중심 주파수 Hz	최대허용대기음압레벨 Lmax(기준 : 20μPa) dB	
	기도 청력검사	굴도 청력검사
125	51	28
250	37	13
500	18	8
1,000	23	7
2,000	30	8
4,000	36	2
8,000	33	15

※ 측정조건 설정 Frequency weighting : Z(Linear); Time weighting(response time) : Slow; Mode : SPL; 측정시간 : 1분 이상; 청력검사를 진행할 때와 동일한 환경에서 측정

B.3.4.2

배점  
20점

청력검사방법의 적정성\_공단

( 5 / 8 )

평가취지

청력검사를 위한 준비  
과정과 실제 검사  
시기 등 검사방법의  
적정성을 확인

검진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청력검사의  
신뢰도 평가

B.3. 검사과정	④-2 청력검사방법의 적정성 (배점: 20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청력검사 시기 및 안내가 모두 적절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0
청력검사 시기 및 안내가 80%이상 적절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0.8
청력검사 시기 및 안내가 70%이상 적절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0.6
청력검사 시기 및 안내가 60%이상 적절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0.4
청력검사 시기 및 안내가 60%이상 적절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0.2

➤ 평가 방법 ('23년 동일)

- ① (검사시기) 소음노출 중단 후 **14시간이 경과된 후** 청력검사를 실시하는지
- ② (안내) 해당 내용을 사업장과 검진자에게 사전안내를 실시하는지를 평가

➤ 판단 기준

- (검사시기의 적정성) 검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검진자의 정밀청력검사 결과지 혹은 관련 문서 또는 검사동의서, (정밀)청력검사 기록지 등에 "소음작업 최종 노출 시간과 실제 검사시간" 기록에 대하여 확인(근무일, 근무종료시간, 검사일, 청력검사 시간, 자필서명 등이 확인 가능한 경우 "적정"으로 평가
- (안내의 적정성) ① 평가대상 사업장에는 공문으로 안내하고 있는지, ② 평가대상 검진자에게 공문 또는 문자 등으로 안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사업장과 검진자 모두에게 적정하게 안내하면 "적정"으로 평가

B.3.5

배점  
30점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의 적정성\_공단

(7/8)

평가취지

생물학적 노출지표  
평가를 위한  
검사 안내 수준 및  
시료채취방법을 확인  
하여 기관의 전체적인  
질(수준)평가

B.3. 검사과정	㉟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의 적정성 (배점: 30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안내 및 시료 채취가 모두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0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안내 및 시료 채취가 80%이상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0.8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안내 및 시료 채취가 70%이상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0.6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안내 및 시료 채취가 60%이상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0.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안내 및 시료 채취가 60%미만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0.2

➤ 평가 방법

- (평가 대상선정)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를 실시한 사업장 10개소 선정

➤ 판단 기준

○ 아래 5가지 세부항목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 "적정"으로 평가

세부평가항목	평가
① 관련기록(대장, 안내문 및 확인서 등)에서 근로자 이름, 서명, 검진일자, 유해물질의 종류, 시료 종류, 시료 수거자 (검진기관 담당자) 등을 확인 할 수 있는가?	
② 근로자의 시료 채취 시기가 적절하고, 기관담당자는 그 사실을 확인 하였는가? (근무시작시간, 종료시간, 채취시간 등의 구체적 기록을 확인하여 채취시기가 법적 기준에 맞는 지 확인, 근로자 및 기관담당자 서명)	
③ 검진기관은 시료 채취 전 수검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교육 혹은 정보를 문서 혹은 문자 직접 설명 등을 제공 하는가? (채취방법, 오염 방지 등)	
④ 적절한 시료 채취 용기를 사용하였는가? (해당 기관에서 사용하는 채취용기 등을 확인)	
⑤ 검진기관은 시료 채취 전 사업장 담당자에게 근로자들이 검체를 시기에 맞게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서 혹은 메일 등을 제공하는가?	

# B.4 판정 및 기록유지

---

< 150점 >

B.4.1 2차 검진대상 및 후속조치 적정성

B.4.2.1 건강진단 결과 판정의 적정성 (의사평가)

B.4.2.2 업무관련성 평가방법의 적정성 (의사평가)

B.4.2.3 업무적합성 평가의 적정성 (의사평가)

B.4.3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 보관 적정성

B.4.1

배점  
30점

2차 검진대상 및 후속조치 적정성\_공단

( 1 / 5 )

평가취지

2차 건강진단 대상자  
에게 해당 검사를  
실시토록 유도하여  
적절한 건강관리구분  
판정 및 업무적합성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는지 평가

B.4. 판정 및 기록유지	① 2차 검진대상 및 후속조치 적정성 (배점: 30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2차 검사 실시 안내 및 미실시 사유 기록이 90% 이상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0
2차 검사 실시 안내 및 미실시 사유 기록이 80% 이상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0.8
2차 검사 실시 안내 및 미실시 사유 기록이 70% 이상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0.6
2차 검사 실시 안내 및 미실시 사유 기록이 60% 이상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0.4
2차 검사 실시 안내 및 미실시 사유 기록이 60% 미만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0.2

➤ 평가 방법

- (평가 대상선정) 판정불가(U판정)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10개소 우선 선정
- \* U판정 사업장이 부족한 경우, 2차 검사 실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평가

➤ 판단 기준

○ 아래 3가지 세부항목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 "적정"으로 평가

세부평가항목	평가
2차검사 대상 근로자와 사업장에 2차검사 대상 임을 1차 고지 하였는가? (사업장-공문/근로자-전화, 쪽지, 문자 등 )	
1차 고지 후 2차검사 대상 근로자와 사업장에 2차 검사 대상자 명단을 보내고, 추가로 통지해서 재검을 받게 하도록 노력을 하였는가? (사업장-공문/ 근로자-전화, 쪽지, 문자 등)	
U판정 사업장에 대하여 U판정 공문에 판정불가 사유(2차 검사 미실시 사유), 확 인날짜, 기관 담당자, 사업장 담당자, 기타 특이사항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정황 (공문, 메일, 메모 등)을 확인 할 수 있는가?	

B.4.3

배점  
30점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 보관 적정성

(5/5)

평가취지

건강진단결과기록,  
보관의 적정성 평가

B4. 판정 및 기록유지	③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 보관 적정성 (배점: 30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 보관이 모두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0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 보관이 90% 이상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0.8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 보관이 80% 이상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0.6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 보관이 70% 이상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0.4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 보관이 60% 이상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0.2

➤ 평가 방법

- 사업장 10개소를 임의 선정하여, 문진표 및 건강진단 결과 기록의 적정성 여부 판단

➤ 판단 기준

- 건강진단 개인표 및 결과표를 사업주 또는 수검자에게 "30일 이내 송부"하는 경우가 90%미만인 경우 최하위 점수 부여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적정"으로 평가

부적정 판단 기준
○ 실제 검사값과 입력값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 결과표 양식에 누락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 C. 업무성과 지표 설명

# 04

C.1 조기발견

C.2 사후관리

C.3 운영성과



# C.1 조기발견

---

< 100점 >

C.1.1 특수건강진단 신규사업장 발굴 노력

C.1.2 직업성 유소견자, 요관찰자 발견 성과

C.1.1

배점  
50점

특수건강진단 신규사업장 발굴 노력

(1/2)

평가취지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이해율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도권 유입이  
취약한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대상 규모  
사업의 신규발굴을  
평가

C.1. 조기발견	① 특수건강진단 신규사업장 발굴 노력 (배점: 50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신규 실시사업장수가 전국 또는 권역별 상위 3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1.0
신규 실시사업장수가 전국 또는 권역별 상위 5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0.8
신규 실시사업장수가 전국 또는 권역별 상위 7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0.6
신규 실시사업장수가 전국 또는 권역별 상위 8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0.4
신규 실시사업장수가 전국 또는 권역별 상위 80% 초과에 해당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0.2

➤ 평가 방법

- 평가대상기간('23.01.01.~'24.12.31.) 동안 공단에 전송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사업장 중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대상규모 신규 실시 사업장수 산정
- ※ 신규사업장 : 특수건강진단 실시 연도 기준 3년 이내 미실시 사업장
- 고용노동부 지방청 단위로 지정 받은 특수건강진단을 권역으로 그룹화
- 기관별 신규 사업장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한 단계 상향

C.1.2

배점  
50점

직업성 유소견자, 요관찰자 발견 성과

(2/2)

평가취지

특수건강진단 본연의  
목적인 직업성  
유소견자(D1, DN),  
직업성 요관찰자  
(C1, CN) 조기발견에  
대한 성과 측정

C.1. 조기발견	② 직업성 유소견자, 요관찰자 발견 성과 (배점: 50점)			
평가기준	평가결과(배점×평가결과)			
직업성 유소견자, 요관찰자 수	수 자체 (배점: 25점)		증가율 (배점: 25점)	
전국 또는 권역별 상위 30% 이내	<input type="checkbox"/>	1.0	<input type="checkbox"/>	1.0
전국 또는 권역별 상위 50% 이내	<input type="checkbox"/>	0.8	<input type="checkbox"/>	0.8
전국 또는 권역별 상위 70% 이내	<input type="checkbox"/>	0.6	<input type="checkbox"/>	0.6
전국 또는 권역별 상위 80% 이내	<input type="checkbox"/>	0.4	<input type="checkbox"/>	0.4
전국 또는 권역별 상위 80% 초과	<input type="checkbox"/>	0.2	<input type="checkbox"/>	0.2

➤ 평가방법

- K2B를 통해 보고된 특수건강진단결과 직업성 건강이상자인 직업성 요관찰자(C<sub>1</sub>, C<sub>N</sub>)와 직업성 유소견자(D<sub>1</sub>, D<sub>N</sub>)수와 건강이상자수의 증가율을 산출하여 상대평가
- C<sub>1</sub>과 C<sub>N</sub>, D<sub>1</sub>과 D<sub>N</sub>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전국 또는 권역별 성과 중 유리한 성과를 적용

\* 가중치 : C<sub>N</sub>=1, 소음성난청 C<sub>1</sub>=3, 소음성난청 외 C<sub>1</sub>=30, D<sub>N</sub>=2, 소음성난청 D<sub>1</sub>=30, 소음성난청 외 D<sub>1</sub>=1,500  
 - 직업성 유소견자 및 요관찰자 ①“수 자체”로 평가하는 방법과 함께 권역별 편차 보정 및 신규발굴률을 위해 ②“증가율”로 평가하는 방법, 즉 2가지로 평가

☞ `23년에 시범평가를 실시하여 가중치 등 해당 지표의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

C.1.2

배점  
50점

직업성 유소견자, 요관찰자 발견 성과

(2/2)

평가취지

특수건강진단 본연의  
목적인 직업성  
유소견자(D1, DN),  
직업성 요관찰자  
(C1, CN) 조기발견에  
대한 성과 측정

C.1. 조기발견	② 직업성 유소견자, 요관찰자 발견 성과 (배점: 50점)			
평가기준	평가결과(배점×평가결과)			
직업성 유소견자, 요관찰자 수	수 자체 (배점: 25점)		증가율 (배점: 25점)	
전국 또는 권역별 상위 30% 이내	<input type="checkbox"/>	1.0	<input type="checkbox"/>	1.0
전국 또는 권역별 상위 50% 이내	<input type="checkbox"/>	0.8	<input type="checkbox"/>	0.8
전국 또는 권역별 상위 70% 이내	<input type="checkbox"/>	0.6	<input type="checkbox"/>	0.6
전국 또는 권역별 상위 80% 이내	<input type="checkbox"/>	0.4	<input type="checkbox"/>	0.4
전국 또는 권역별 상위 80% 초과	<input type="checkbox"/>	0.2	<input type="checkbox"/>	0.2

➤ 평가 방법

평가대상

- 전회 평가대상기간('21.1.1~'22.12.31), 금회 평가대상기간('23.1.1~'24.12.31) 중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동 기간내에 K2B로 결과 보고를 완료한 수검자

평가산식

- 직업성 건강이상자 수(금회 평가대상 중 건강이상자수)

$$= \underline{C_N \text{ 수}} + (\underline{\text{소음성난청 } C_1 \text{ 수} \times 3}) + (\underline{\text{소음성난청 외 } C_1 \text{ 수} \times 30}) + (\underline{D_N \text{ 수} \times 2}) + (\underline{\text{소음성난청 } D_1 \text{ 수} \times 30}) + (\underline{\text{소음성난청 외 } D_1 \text{ 수} \times 1,500})$$

- 직업성 건강이상자 수 증가율(%)

$$= \frac{(\text{금회 평가대상 중 건강이상자수}) - (\text{전회 평가대상 중 건강이상자수})}{\text{전회 평가대상 중 건강이상자수}} \times 100$$

※ 동일인이 2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는 각각 인정

# C.2 사후관리

---

< 20점 >

C.2.1 사후관리 대상 설명 적정성 (의사평가)

# C.3 운영성과

---

< 80점 >

C.3.1 건강진단결과 등 K2B입력 적정성

C.3.2 수검자 또는 사업장 만족도

C.3.1

배점  
30점

건강진단결과 등 K2B입력 적정성

(1/2)

평가취지

K2B 전산 관리 상태  
적정성을 평가하여  
신뢰도 향상 유도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의  
이의제기 감소 및  
자체 수준 향상  
노력도 제고

C.3. 운영성과	① 건강진단결과 등 K2B입력 적정성 (배점: 30점)
평가기준	
총점 (배점×평가결과)	
K2B 입력오류가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1.0
K2B 입력오류 비율이 3% 미만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0.8
K2B 입력오류 비율이 3% 이상 ~ 5% 미만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0.6
K2B 입력오류 비율이 5% 이상 ~ 10% 미만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0.4
K2B 입력오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0.2

➤ 평가 방법

- K2B에 보고된 사업장 10개소를 선정하여, 입력오류 입력 결과를 집계하여 결과 입력 건수를 산출하여 평가
- 자체 평가보고서 등록 및 작성의 적정성은 자체 평가보고서 작성 후 제출기한 내 K2B에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공고된 양식에 모두 작성하여야 하며, 점수만 기재한 경우 불인정)

➤ 판단 기준

입력 오류 산출 기준
○ 사업장관리번호, 개시번호 등 사업장 정보 입력오류 (관할지청에 미보고, 작업환경측정결과와 미일치 등 문제발생)
○ 실제 검사값과 입력값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 결과표 양식에 누락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C.3.2

배점  
50점

수검자 또는 사업장 만족도

(2/2)

평가취지

특수건강진단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수검자 또는 사업장  
만족도 평가

C.3. 운영성과	② 수검자 또는 사업장 만족도 (배점: 50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만족도 조사결과 90점 이상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1.0
만족도 조사결과 85점 이상~90점 미만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0.8
만족도 조사결과 80점 이상~85점 미만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0.6
만족도 조사결과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0.4
만족도 조사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0.2

➤ 평가 방법

- 평가대상기간('23.01.01.~'24.12.31.) 동안 검진대상 사업장 현황을 K2B에서 내려받아 평가

※ 외부 리서치기관에 의뢰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점수에 따라 평가

특수건강진단 만족도 조사 인정 기준

- 조사된 모수가 30개 미만 또는 성공 조사건수가 30개 미만인 경우
  - 기관의 만족도 조사결과가 전체 평균점수를 초과한 경우 평균점수에서 한단계 상향 평가
  - 기관의 만족도 조사결과가 전체 평균점수 이하인 경우 평균점수에서 한단계 하향 평가

# D. 가감점 지표 설명

# 05



# D.1 가점제

---

< +200점 >

- D.1.1 포상 및 종합기술지원 사례
- D.1.2 급성중독질환 발굴 및 조치 건수
- D.1.3 정부반영노력도  
(기관 미소재 지역 특검 수검자수)

D.1.1

배점  
+50점

포상 및 종합기술지원 사례

( 1 / 3 )

평가취지

기관 및 소속 직원의  
포상실적 발굴을 통한  
사기진작 및 대외  
공신력 확보

전문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특수건강진단  
으로 인한 성과 극대화  
유도

D.1. 가 점	① 건강진단 관련 포상 및 종합기술지원 사례 (가점: +50점)	
평가기준		최고점
건강진단 관련 포상		+50점
사후관리연계 등 종합기술지원 사례		

1. <포상>

○ 해당 기관 소속 직원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표창장 제출로 평가

포상 훈격별 점수 기준			
포상 내역	가점	포상수	총점
<b>총 합</b>			
차관급 이상	30점		
차관급 이하	20점		

- ※ 차관급 이상 :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서울특별시시장, 광역시·도지사, 공단 이사장
- ※ 차관급 이하 : 고용노동청(지청)장, 공단(교육원장, 인증원장, 기술원장, 본부장, 지사장),  
지자체(시·도·군·구), 산업안전보건 분야 학회장
- ※ 기관 또는 수행인력이 두가지 이상 지정받은 경우 중복 인정 불가

D.1.1

배점  
+50점

포상 및 종합기술지원 사례

(1/3)

평가취지

기관 및 소속 직원의  
포상실적 발굴을 통한  
사기진작 및 대외  
공신력 확보

전문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특수건강진단  
으로 인한 성과 극대화  
유도

D.1. 가 점	① 건강진단 관련 포상 및 종합기술지원 사례 (가점: +50점)	
평가기준	최고점	평가결과
건강진단 관련 포상	+50점	
사후관리연계 등 종합기술지원 사례		

2. <종합기술지원>

- 산업안전보건관련 전문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특수건강진단과 관련된 사전조사, 사후관리조치 및 작업환경개선 등 종합기술지원 실적을 평가
  - ※ 산업안전보건관련 전문기관(고용노동부 또는 공단 지정기관) : 직업병안심센터, 근로자건강센터, 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전문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등
    - 동일기관 내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부서 또는 외부 전문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한 후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한 종합기술지원 실적도 인정
    - 평가기간 동안 ①사전조사(신규 특검 실시 대상), ②사후관리조치(보호구 착용 등 단순 조치 불인정) 또는 작업환경개선조치(직업성질병 C<sub>1</sub>, D<sub>1</sub>, 야간작업 C<sub>N</sub>, D<sub>N</sub> 대상)의 실적별 점수를 합산
- 지역, 업종별 특화사업 또는 광역·지역 단위 안전보건협의체 참여시 가점 +10점 부여

구 분	4회 이상	3회	2회	1회
<b>총 합</b>				
① 사전조사	+ 25점	+ 20점	+ 15점	+ 10점
② 사후관리조치 또는 작업환경개선조치	+ 25점	+ 20점	+ 15점	+ 10점
③ 안전보건협의체 참여	+ 10점			

D.1.2

배점  
+100점

급성중독질환 발굴 및 조치 건수

(2/3)

평가취지

질병 조기발견을 위해  
급성중독질환 발굴 및  
조치에 대한  
기관 성과평가

D.1. 가 점	② 급성중독질환 발굴 및 조치 건수 (가점: +100점)		
	평가기준	최고점	평가결과
	급성중독질환 발굴 및 조치 건수	+100점	

○ 근로자의 중독질환 발굴

- 평가기간 동안 직업환경의학과 내원 근로자 또는 타 진료과의 의뢰 대상자에 대하여 급성중독질환 등을 발굴하여 고용노동부(직업병안심센터 포함)에 보고한 실적을 평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중독질환 발굴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50점 부여
- 상기 외 직업성 질환 발굴 실적이 있는 경우 건당 가점 +10점 부여

구 분	점 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중독질환 발굴 시	+ 50점
상기 외 직업성 질환 발굴 시	건당 +10점

D.1.3

배점  
+50점

정부반영노력도

(3 / 3)

평가취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등  
공공서비스 기여를 유도

D.1. 가 점	③ 정부반영노력도 (가점: +50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특건 기관 미소재 지역 수검자수가 전국 또는 권역별 상위 30% 이내에 해당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1.0
특건 기관 미소재 지역 수검자수가 전국 또는 권역별 상위 50% 이내에 해당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0.8
특건 기관 미소재 지역 수검자수가 전국 또는 권역별 상위 70% 이내에 해당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0.6
특건 기관 미소재 지역 수검자수가 전국 또는 권역별 상위 80% 이내에 해당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0.4
특건 기관 미소재 지역 수검자수가 전국 또는 권역별 상위 8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0.2

- 평가방법
  - 공단에 전송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사업장 중 특수건강진단 기관 미소재 지역(특수 건강진단 사각지대)의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특수건강진단 수검자수 산정
    - ※ 건설업 일용근로자는 제외
  - 고용노동부 지방청 단위로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을 권역으로 그룹화
- 평가대상
  - 전회 평가대상기간('21.1.1~'22.12.31), 금회 평가대상기간('23.1.1~'24.12.31) 중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동 기간내에 K2B로 결과 보고를 완료한 수검자

# D.2 감점제

---

< -200점 >

D.2.1 부실검진으로 사회적 물의 야기

D.2.2 정부 행정조치 처분 여부

D.2.1

배점  
-100점

부실검진으로 사회적 물의 야기

(1/2)

평가취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역할·책임의 명확화 및  
부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고  
법 준수 분위기 확산

D.2. 감 점	① 부실검진으로 사회적 물의 야기(감점 최대 100점)	
	평가기준	최고점
	부실검진으로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100점

- 평가 방법
  - 언론보도, 국회 등 외부기관 문제제기, 공단 비용지원 관리 현황 등 확인을 통해 기관 업무 부실, 부정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실시한 사례 확인
  - 평가반에서 기관방문 평가시 사실관계 등을 확인
- 판단기준
  - '23.1.1 이후 기관 업무 부실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 최대 -100점  
\* 1차 평가반에서 확인, 2차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후 감점 확정
  - 의도적인 부정한 방법으로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을 받은 사항이 확인된 경우 : 최대 -100점

※ 부실, 부정의 정도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등급 부여 가능

## D.2.2

배점  
-100점

## 정부 행정조치 처분 여부

(2/2)

## 평가취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역할·책임의 명확화 및  
부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고  
법 준수 분위기 확산

D.2. 감 점	② 정부 행정조치 처분 여부(감점 최대 100점)	
	평가기준	최고점
	정부 행정조치 처분 여부	-100점

- 평가 방법
  - 특수건강진단 업무와 관련 고용노동부의 업무정지 및 시정조치·경고 처분 실적 집계
- 판단기준
  - 평가기간('23.01.01. ~ '24.12.31.) 동안 특수건강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개월 수에 따라 감점 실시
    - 업무정지 처분 개월수 별로 -15점 적용, 최대 -80점
  - 평가기간('23.01.01. ~ '24.12.31.) 동안 특수건강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시정조치·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건별 합계에 따라 감점 실시
    - 시정조치·경고 처분 건별로 -2점 (최대 -20점)

감사합니다